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28
----------	------

2017년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7. 7. 12.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7. 7. 14.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7. 7. 2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II. 제안설명 및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1. 제안이유

- 법정의무경비 정산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 등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골자

(1) 총괄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31,869,841	29,838,588	2,031,253	6.8
일 반 회 계	22,518,827	20,673,581	1,845,246	8.9
특 별 회 계	9,351,014	9,165,007	186,007	2.0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9조 8,385억원에서 2조 313억원이 증가한 31조 8,698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조 6,735억원에서 1조 8,453억원이 증가한 22조 5,188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조 1,650억원에서 1,860억원이 증가한 9조 3,510억원 규모임

(2) 세입예산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조 588억원을 반영하였음
 - 정부추경 등으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805억원과 지방교부세 159억원, 기타수입 90억원을 증액하고
 - 세입여건 변동에 따라 DMC매각수입 $\Delta 3,189$ 억원 감액하여 총 1조 8,453억원을 증액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감채기금
전입금 2,400억원과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타회계 전입금 172억원을 증액하고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Delta 415$ 억원을 감액하고,
 - 신림선 사업비 축소에 따른 지방채 미 발행분 $\Delta 320$ 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3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미정산분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15억원과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 순세계잉여금 599억원 증액하고

-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미 교부로 $\Delta 38$ 억원 감액,

- 사업추진시기 조정에 따른 부담금 $\Delta 120$ 억원 감액 등 총 956억원을 증액하였음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 순세계잉여금 703억원,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수익자부담금 142억원을 증액하고,

- 타 회계 전입금 $\Delta 700$ 억원 감액과 국고보조금 $\Delta 6$ 억원을 감액하여 총 13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 순세계잉여금 $\Delta 1,339$ 억원과 미 반영된 국고보조금 $\Delta 239$ 억원 감액하여 총 $\Delta 1,578$ 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20억원을 증액하고

-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89억원 감액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수입 △40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469억원을 감액하였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444억원과 시비 매칭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44억원 총 888억원을 증액하였음
- 소방안전특별회계는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을 증액하여 총 88억원을 증액하였음

(3) 세출예산

-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베이비부머, 중·장년 및 노인 등 세대 맞춤형의 일자리 1만 3천여개 창출에 1,351억원을 반영하였음
 - 시와 자치구가 함께 현장수요 중심의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에 10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음
 - 2017년 추가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65억원을 증액하고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보조 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86억원을 배정하였음

- 또한 107억원을 투입하여 혼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관련 일자리 지원 등에 14억원을 증액하였음
- 중·장년 세대의 소득지원과 사회공헌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에 88억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에 30억원을 추가 배정하였음
- 사회복지전달체계 거점역할을 하는 사회복지관 인력을 증원하고, 독거어르신 생활관리사 추가 채용 등을 통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에 49억원을 증액하였음
-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의 창업을 돕기 위해 15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56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00억원을 신규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음
- 서울형 혁신지구 마을교사 지원에 10억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7억원을 증액하는 등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우선하였음
- 둘째, 저소득·취약계층 복지강화, 대기질·안전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2,169억원을 반영하였음
 - 의료급여 888억원, 기초연금 155억원, 긴급복지 지원 42억원,

주거급여 29억원, 국가암검진 55억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20억원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복지범위·대상 확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1,286억원을 반영하였음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252억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에 40억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24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1억원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질 개선에 331억원을 반영하였음

- 지하철 승강장 비상문 개선에 321억원, 1~4호선 내진보강에 36억원 추가 증액하고, 서울대공원 조류사 AI재발 방지 및 노후시설 개선에 71억원, 도로함몰 예방 45억원,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35억원 등 지하철, 도로, 보도, 공원 등 도시 노후 인프라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해 552억원을 증액하였음

- 셋째, 연내 완공해야 할 사업에 필요 재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 여건변동에 따라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연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한강 함상공원 조성,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 3개 사업에 76억원을 증액하였음

- 공정지연으로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비 △320억원 감액, 타 공사와의 연계 등 공정 조정으로 현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114억원, 국고보조금 세입 감소에 따른 시비 조정 △938억원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정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총 △1,653억원을 감액하였음

○ 넷째, 2016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 추경재원, 교육청 안정적 재원운용 등에 지원하겠음

- 자치구 교부금 5,323억원, 교육청 전출금 5,885억원 등 법정경비 정산에 총 1조 1,20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감채기금 4,129억원, 공사전출금 2,40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미지급액 959억원, 타회계 전출금 400억원을 증액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손으로 인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021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6,656억원을 반영하였음

Ⅲ.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엄지운)

1.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017년 7월 12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¹⁾ 및 「지방재정법」 제45조²⁾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9조 8,385억원 대비 6.8%, 2조 312억원을 증액한 31조 8,698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1)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표 3-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당초예산	간주처리				
	①=②+③	②	③	④	⑤=④-①	⑤/①
총 계 규 모	29,838,588	29,801,117	37,471	31,869,841	2,031,253	6.8
일 반 회 계	20,673,581	20,639,809	33,772	22,518,827	1,845,245	8.9
특 별 회 계	9,165,007	9,161,308	3,699	9,351,014	186,007	2.0

□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1조 8,452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① 지방교부세중 분권교부세 119억 4,200만원, ② 지방교부세중 소방안전교부세 38억 8,400만원, ③ 국고보조금 등 804억 5,100만원, ④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 2조 587억 9,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요청하고, ⑤ 세외수입은 증액(91억 800만원) 및 감액(△3,189억 3,200만원)하여 △3,098억 2,300만원으로 감액 조정요청 한 것임

○ **특별회계**는 1,860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29조 8,385억원)보다 2조 312억원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일반회계**의 경우, 1조 8,452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여 법정 의무 경비인 교육청 전출금(5,885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4,235억 3,700만원), 감채기금 적립(4,129억원) 등을 포함한 131개 사업, 1조 8,624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하고, 15개 사업에 대해 △172억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7개 특별회계에 대해 총 1,860억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16개 세부사업, △3,521억원을 감액조정 요청하고, 24개 세부사업에 대해 5,382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3. 주요 검토사항

①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1) 지난해회계연도 잉여금에 대한 세입처리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발생한 경우, 법정 의무경비를 정산할 필요가 있는 바³⁾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잉여금 2조 587억 9,000만원에 대해 ① 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 ②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③ 타 회계전출 등 이른바 법정경비 등을 정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법정 의무경비 등을 정산하고자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잉여금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과목으로 세입조치 요청하고 있어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잉여금 2조 587억 9,000 만원을 세입과목(순세계잉여금)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2) 국고보조금등⁴⁾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에 조정요청된 **국고보조금** 등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당초 내시된 국고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증·감 변경되어 통보 되거나 정부추경에 대해 선제적 편성 등을 위한 것임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3조 1,241억 1,000만원)보다 804억 5,100만원 증액된 3조 2,045억 6,200만원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2조 8,850억 1,100만원)보다 755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 한 것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비 170억원), **기초연금 지급**(국비 128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 125억원),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국비 56억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국비 51억원) 등의 사업에 대해 증액편성을 요청하고,

 -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18억원),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설치**(△5억원) 등 11개 사업이 감액 통보됨에 따라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국고보조금등에 포함되는 **기금**은 12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고자 49억 4,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요청하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중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 7,500만원 감액 통보되어 제출안대로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 등”은 ①국고보조금, ②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③기금으로 구성됨

3)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교부세법」 5)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고 있으나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
-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하여 회계연도중 보통교부세 119억 4,2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38억 8,400만원이 추가교부 됨에 따라 일반회계중 지방교부세 수입을 기정예산(1,342억 5,500만원)보다 158억 2,600만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것임
 -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정예산(1,041억 6,900만원)보다 119억 4,2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 '17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자치부가 당초 내시보다 증액된 1,104억 4,1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를 변경통보 하고, 6) '16회계연도 정산분(56억 7,000만원) 7)을 교부함에 따라 추경을 통하여 보통교부세 세입예산이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소방안전교부세**는 기정예산(292억 4,900만원)보다 38억 8,4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 '17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국민안전처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292억 7,700만원으로 통보 8)함에 따라 세입예산을 경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이후

5)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6) 행정자치부, 교부세과-2698 ('16.12.30), “2017년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통지”

7) 행정자치부, 교부세과-400 ('17. 4.24),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 교부결정 통지”

8) 국민안전처, 안전사업조정과-2740 ('16.12.28), “2017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 통보”

'16회계연도 정산분(38억 5,600만원)⁹⁾까지 교부되어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7년도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10조에 회계연도중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계연도 개시이후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를 간주처리 하여 세입조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 「지방재정법」 제45조¹⁰⁾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정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해 회계연도 정산분이나 소방안전교부세 등과 같이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경예산을 통하여 세입경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9) 국민안전처, 안전사업조정과-1052 ('17. 4.25), "2016회계연도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 시·도별 교부액 통보"

10)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4)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중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기정예산(1조 4,719억 700만원)보다 △3,098억 2,300만원 감액조정 요청한 바
- 당초 본예산 편성시 경상적 세외수입중 매각사업수입(DMC 사업용지 매각) 3,18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부지에 대해 지정용도 변경, 교통개선부담금 완화 등의 조건을 변경하고 매각하여도 금년도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매각사업수입(△3,189억원) 전액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아울러 지난 '16년 12월 21일부터 서울에너지공사가 설립·운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사 설립 등기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말일에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명시한 바 '17년도의 경우,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 그러나 '1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80억 8,000만원 발생되어 '17년 2월, 서울시와 공사가 체결한 상환약정¹¹⁾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을 공사로 전출하기에 앞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임시적 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하고자 하는 것임

11) 2017년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 용자(상환) 약정서 제2조

③ 2016회계연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일반회계로 세입금처리 후 2017년에 전액 재정투융자기금에 상환한다. (2017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기금운용관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체결)

〈표 3-2〉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일 반 회 계	20,673,581	1,845,245	22,518,827	
세 외 수 입	1,471,907	△309,823	1,162,084	
경상적세외수입 (매각사업수입)	318,932	△318,932	0	◦ DMC 사업용지매각 △318,932
임시적세외수입 (시·도비환급수입)	46,666	1,028	47,694	◦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 1,028
” (그 외 수 입)	95,362	8,080	103,443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세입처리 8,080
지 방 교 부 세	134,255	15,826	150,081	
보 통 교 부 세 (분권교부세)	104,169	11,942	116,111	◦ 분권교부세 추가교부 11,942
소방안전교부세	29,249	3,884	33,133	◦ 소방안전교부세 추가교부 3,884
국고보조금 등	3,124,110	80,451	3,204,562	
국 고 보 조 금	2,885,011	75,508	2,960,519	◦ 회계연도중 증·감 교부 75,508
기 금	176,359	4,943	181,303	◦ 정부 기금사업 증·감 통보 4,943
보 전 수 입 등 내 부 거 래	387,932	2,058,790	2,446,722	
순세계잉여금	0	2,058,790	2,058,790	◦ '16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058,790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기정예산(9조 1,650억원)보다 1,860억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임

1)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경정

-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90억 3,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598억 9,1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702억 9,500만원), 소방안전특별회계(28억 1,700만원)는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을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요청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1,338억 5,6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88억 6,500만원)는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추가경정예산이 회계연도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항목에 대해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17년도 예산 편성당시 '16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를 전망하여 미리 세입예산에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실제 결산결과에 따라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을 경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의 경우,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8,138억원)을 예측하여 실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88.7%, 7,215억원을 '17년도 기정예산중 7개 특별회계에 미리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¹²⁾

-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시행령」 13)을 근거로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될 경우,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는 사례가 있으나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7조는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결산결과를 예측하여 당해 회계연도에서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지속적인 이견이 제기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대해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얻은 후 적용여부가 결정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12) 예산담당관-6969 ('17. 6.14),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7년도 기반영 내역

13) 「지방회계법시행령」

-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2)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처리

- **국고보조금** 등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정부의 감액·변경내시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415억 5,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38억 1,5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5억 7,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239억 2,700만원)는 기정예산중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을 감액편성 요청하고,
- **도시개발특별회계**(20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443억 8,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는 것으로서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주택사업특별회계**중 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의 경우, 서울시가 당초 편성한 국고보조금(496억 3,300만원)보다 적은 257억 500만원을 국토교통부가 교부통보¹⁴⁾ 함에 따라 국비 교부액 및 사업진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239억 2,700만원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3) 회계간 전입에 대한 세입처리

- 특별회계는 자체수입 외에 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예산을 구성하고 있어 금번 추경을 통하여 회계간 전입을 통하여 세입예산을 조정요청하고 있음

14)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942 ('17. 4.28), “2017년 임대주택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81억 2,500만원을 전출받아 세입예산중 기타회계전입금 81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 등에 세출재원을 마련하고자 일반회계 및 동 특별회계내 계정간 전출입을 통하여 기타회계전입금 515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702억 9500만원)을 추경을 통하여 세입편성 요청함에 따라 기편성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 기정예산(724억원)중 △700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정부추경에 따라 국비가 추가교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업에 매칭이 예상되는 시비(443억 8,100만원)를 일반회계로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입편성 요청한 것임
- 소방안전특별회계중 기타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7,432억 4,000만원)보다 59억 6,7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15)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100분의 75 이상을 2017년까지는 소방분야에

15)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는 제1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의 75%에 해당하는 29억 1,300만원을 동 특별회계로 전입시키고,

- 지역자원시설세중 특정부동산분을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있어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초과수납된 74억 3,400만원과 '15회계연도 정산분 42억 600만원을 합한 116억 4,000만원을 동 특별회계로 전입시키고, 기편성된 일반회계전입금중 △85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3〉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특별회계 ^{주1)}	9,165,007	186,007	9,351,014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409,970	183,609	1,593,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41,554 ◦ 금융기관채 △32,000 ◦ 순세계잉여금 9,038 ◦ 기타회계(도시개발)전입금 8,125 ◦ 기금전입금 240,000
교통사업 특별회계	1,145,771	95,596	1,241,3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부담금 △11,993 ◦ 국고보조금 △3,815 ◦ 순세계잉여금 59,891 ◦ 기타회계(일반)전입금 30,000 ◦ 기타회계(계정간)전입금 21,514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24,475	13,900	138,3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부담금 14,180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75 ◦ 순세계잉여금 70,295 ◦ 기타회계(도시개발)전입금 △70,000
주택사업 특별회계	1,829,438	△157,784	1,671,6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23,927 ◦ 순세계잉여금(도정계정) △102,050 ◦ 순세계잉여금(국민계정) △31,806
도시개발 특별회계	1,315,037	△46,865	1,268,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2,000 ◦ 순세계잉여금 △8,865 ◦ 재투여수금 수입 △40,0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78,898	88,763	1,067,6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44,381 ◦ 기타회계(일반)전입금 44,381
소방안전 특별회계	751,815	8785	760,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세계잉여금 2,817 ◦ 기타회계전입금 5,967

※ 주1) 10개 특별회계의 총계

② 세출예산 증액 조정요청 관련 검토

(1) 국비 추가교부 (국비만 증액 편성)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¹⁶⁾ 1,377억원(국비 19억 5,300만원 포함)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¹⁷⁾ 273억원이 포함된 1,65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금번 추경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국비 170억원을 서울시로 추가 교부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유선협의하여 협의된 국비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추경안에 반영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기정예산(1,377억원)에 대해 국비 170억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기정예산(273억원)중 시비 △170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추경안 제출시점('17. 7.12)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추가교부에 대한 내시를 공문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정부추경안에 대한 국회 의결결과 또한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비가 편성액보다 부족교부 되면 '재원 없는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의 국비 교부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16)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17)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동 사업은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비율(46%)이 당초 목표치(70%)보다 저조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91억 3,5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전용한 바 있고, 18) 금년도에도 6월말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현액(273억원)의 7.7%, 20억 9,2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제출된 바, 19)

- 금년도의 경우, 정부추경을 사유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70억원을 증액하고 기 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0억원은 감액조정 요청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당초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경을 통해 예산편성의 오류를 상쇄하는 사례가 감소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953) 165,450	(×17,000) -	(×18,953) 165,450	
사무관리비	400	-	400	
행사운영비	50	-	50	
자치단체경상보조	27,300	△17,000	10,300	○ 사비 감액 : △170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953) 137,700	(×17,000) 17,000	(×18,953) 154,700	○ 국비 증액(정부추경)에 따른 증가분 : 170억원 - 신축비 : 98억 1,000만원 (30개소×3억 2,700만원) - 리모델링비 : 71억 9,000만원 (65개소×1억 1,000만원)

18) 서울시, 보육담당관-23517 ('16.12. 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전용계획”

19)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13080 ('17. 7.11)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예산현액 273억원의 7.7%, 20억 9,200만원을 집행 (임대보증금 15개소 지원)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예산현액 1,377억원의 15.1%, 208억 3,700만원을 집행 (국공립어린이집 98개소 확충)

(2) 국비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대응편성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50:50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9,788억 6,400만원)보다 887억 6,300만원(국비 443억 8,100만원, 시비 443억 8,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추경안에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²⁰⁾ 추가교부가 예상되는 국비에 대해 시비 대응분을 선제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²¹⁾
- 동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비용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추경안에 대한 국회 의결결과는 유동성이 있어 국비 추가교부에 대한 내시 없이 서울시의 추계를 바탕으로 증액조정 규모를 산정한 것은 국비의 부족수령이나 초과수령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증액편성할 필요성은 있으나, 정부추경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별도 추경

20) 정부추경안은 **의료급여**에 대해 기정예산(4조 7,991억 6,400만원)보다 4,435억 7,800만원을 증액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대한민국정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p.495

21)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13080 (17. 7.11)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예산현액 273억원의 7.7%, 20억 9,200만원을 집행 (임대보증금 15개소 지원)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예산현액 1,377억원의 15.1%, 208억 3,700만원을 집행 (국공립어린이집 98개소 확충)

을 통해 소요예산을 증감조정하는 합리적인 선택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5〉 의료급여 사업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488,401) 978,864	(×44,381) 88,763	(×532,783) 1,067,627	
사무관리비	(×1,363) 2,727	-	(×1,363) 2,727	
민간위탁금	(×479,871) 961,803	(×44,300) 88,600	(×524,171) 1,050,403	○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 : 886억원 (국비 443억원 포함) 증액
자치단체 경상보조	(×7,166) 14,332	(×81) 163	(×7,248) 14,496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 1억 6,300만원 (국비 8,100만원 포함) 증액

□ 금년도 신규 사업인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소관 **지하철 승강장비 상문 개선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정부의 국비 가내시 없이 서울시의 국비신청액(40억원)을 근거로²²⁾ 국비 39억 2,600만원과 시비 107억 6,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나

○ 금번 추경을 통해 국비(공사공단자본전출금)를 기정예산(39억 2,600만원)보다 183억 7,400만원 증액하고, 대응편성 되는 시비(출자금)도 기정예산보다 137억 8,0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22) 재정관리담당관-13549 ('16.11.18),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및 국고보조금 가내시 내역”

〈표 3-6〉 지하철 승강장 비상문 개선사업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3,926) 14,686	(×18,374) 32,154	(×22,300) 46,840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3,926) 3,926	(×18,374) 18,374	(×22,300) 22,300	◦ 고정문 광고판 철거 및 비상문 설치(국비)
출자금	10,760	13,780	24,540	◦ 고정문 광고판 철거 및 비상문 설치(시비)

- 지하철 승강장 비상문 개선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본예산 편성 당시 국비내시가 없었던 것은 물론 회계연도 개시이후 추경예산안 제출일 현재('17. 7.12)까지 국비교부에 대한 내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²³⁾
 - 추경예산안의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정부추경안에 지하철 승강장안 전문 개선이 신규 편성되어 있다고 하나 현재 상황에서 실제 교부 가능성이나 교부규모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교부권한이 서울시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을 기정예산(39억 2,600만원)보다 468% 증액 시킨 223억원으로 증액편성 요청하고 있어 동 사업에 추가편성 요청된 국고보조금의 실제 내시 가능성과 내시규모가 담보되기 전까지 편성요청액에 대해 의결을 유보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3) 재정관리담당관-8320 ('17. 7.13), "17회계연도 개시이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현황"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소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은 본 예산 편성시 정부의 국비 가내시 없이 서울시의 국비신청액(199억 2,800만원)을 근거로 국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나²⁴⁾ '16년 12월, 국토교통부가 '17년도 국고보조금을 220억원으로 확정내시²⁵⁾ 함에 따라 금번 추경을 통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금번 추경을 통하여 국비(공사공단자본전출금)를 기정예산(199억 2,800만원)보다 20억 7,200만원 증액하고, 대응편성 되는 시비(출자금)도 기정예산보다 15억 5,4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7〉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9,928) 34,874	(×2,072) 3,626	(×22,000) 38,500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9,928) 19,928	(×2,072) 2,072	(×22,000) 22,000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국비)
출자금	14,946	1,554	16,500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시비)

○ 아울러 **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사업**과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은 국고에 대한 증액편성을 요청하며 대응편성된 시비를 출자금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바

24) 재정관리담당관-13549 ('16.11.18),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및 국고보조금 가내시 내역”

25)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3043 ('16.12. 7), “17년도 예산 확정내시 알림”

- 출자할 경우, 「지방재정법」 26)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의결 대상도 신규 및 기존, 법정 의무 출연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추경예산안 제출일 현재('17. 7.12)까지 동 출자금과 관련된 안건이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행정자치부의 경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회신한 바 있어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과 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사업**에 편성요청 된 출자금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소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 사업은 기정예산(580억 4,400만원)보다 251억 8,000만원(국비 125억 9,000만원, 시비 125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50:50의 비율로 매칭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안의 사업별설명서에는 조기폐차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증액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²⁷⁾

26)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7)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17. 7), p.107

■ 추진현황 및 계획

- 노후경유차 저감장치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 등 지원 확대(총 6,408대 확대) : 조기폐차 5,000대, PM-NOx동시저감장치 80대, 건설기계(저감장치) 788대, 건설기계(엔진교체) 540대 증가

- 동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확정내시('16.12)²⁸⁾를 반영하여 580억 4,400만원(국비 288억 5,300만원 포함)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을 통해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증액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동 사업은 정부추경안에 포함된 것이라 하나, 국비 추가교부에 대한 내시 없이 환경부와 유선 협의된 국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지난 '17년 1월에는 환경부가 서울시에 대한 국비 교부액을 오히려 △64억 3,200만원 감액조정 하여 통보한 사실이 있어²⁹⁾ 정부추경 의결후 실제 수납될 국비 규모에 대한 유동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지난 '16년도의 경우에도 정부추경('16. 9)에 따라 서울 시도 72억 3,300만원(국비 36억 1,6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증액조정한 바 있고, 신청접수·서류검토·승인 등에 약 2개월이 소요되어 보조금을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으로 증액된 소요예산 전액(72억 3,300만원)을 '17년도로 명시이월한 바 있어
 -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편성 요청된 소요예산의 경우에도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예산의 적정규모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이후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8)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3820 ('16.12.13) “2017년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

29) 환경부, 교통환경과-919 ('17. 1.25) “2017년 조기폐차 예산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 알림”

〈표 3-8〉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28,853) 58,044	(×12,590) 25,180	(×41,443) 83,224	
사무관리비	100	-	100	
공공운영비	108	-	10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	-	2	
민간위탁금	128	-	128	
시설비	(×1,449) 2,899	-	(×1,449) 2,899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27,403) 54,806	(×12,590) 25,180	(×39,993) 79,986	○저공해장치 부착 등(추가) : 251억 8,000만원 (국비 125억 9,000만원 포함) 증액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소관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는 기정예산(1,826억 1,200만원)보다 164억 8,300만원(국비 56억 800만원, 시비 108억 7,500만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바

○ 동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가내시를 근거로 국비 585억 5,700만원과 시비 1,24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³⁰⁾

○ ① 본예산 의결('16.12.23) 이후 보건복지부가 국비교부액을 가내시보다 56억 800만원 증액된 641억 6,500만원으로 확정내시함('16.12.30)³¹⁾에 따라 추가교부 되는 국비(56억

30)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7081 ('17. 6.20)

3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1595 ('16.12.30) “2017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확정내시통보”

800만원)와 이에 대한 시비대응분(91억 5,900만원)을 증액하고, ② 국비 미지원시설 73개소의 신규개원으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되어 시비 17억 1,6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표 3-9〉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국비)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58,557) 182,612	(×5,608) 16,483	(×64,165) 199,096	
자치단체 경상보조	(×58,557) 182,612	(×5,608) 16,483	(×64,165) 199,096	○ 국비 지원시설 확정내시 반영 증액 : 147억 6,700만원 (국비 56억 800만원 포함) ○ 국비 미지원시설 신규개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증액 : 17억 1,600만원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소관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국비)** 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를 근거로 국비 174억 4,000만원과 시비 1,142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1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³²⁾

○ 본예산 의결('16.12.23) 이후 보건복지부가 국비교부액을 가내시보다 25억 7,200만원 증액된 200억 1,300만원으로 확정내시('16.12.30)한 바,³³⁾

○ 추가교부 되는 국비(25억 7,200만원)와 이에 대한 시비대응분(42억 200만원)을 반영하고자 금번 추경을 통해 기정예산(1,317억

32)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7081 ('17. 6.20)

33)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1595 ('16.12.30) “2017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

3,300만원)보다 67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0〉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국비)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7,440) 131,733	(×2,572) 6,775	(×20,013) 138,508	
자치단체 경상보조	(×17,440) 131,733	(×2,572) 6,775	(×20,013) 138,508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증액 : 45억 9,200만원 (국비 17억 4,300만원 포함) ○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증액 : 21억 8,200만원 (국비 8억 2,800만원 포함)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16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전년대비 인상된 선정기준액을 고시한 바 있고,³⁴⁾ 노인 인구도 증가되어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기정예산(1조 3,669억 6,400만원)보다 155억 5,200만원(국비 128억 7,200만원, 시비 26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주관부서는 자치구 과부족액을 조사하고 예산 부족을 방지하고자 보건복지부에 당초 내시된 국비교부액 (1조 1,371억 2,400만원)을 128억 7,200만원 증액하여 변경내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17. 7. 4)하고, 추경예산안에 국비 128억 7,200만원과 이에 대한 시비대응분 26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나,³⁵⁾

34) 2017년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① 단독가구의 경우,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② 부부가구의 경우 160만원에서 190.4만원으로 인상되었음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7호, '16.12.30) 제2조 (2017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17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1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0.4만원으로 한다.

35) 서울시, 어르신복지과-12375('17. 7. 4) “2017년 기초연금 지급 예산 변경내시(추가) 요청”

-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시점('17. 7.12)까지 보건복지부가 변경내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17개 시·도에 대한 하반기 집행소요액을 조사한³⁶⁾ 후 실제 변경내시될 국비교부액의 규모는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동 사업이 노인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소요예산의 증액 편성은 필요하나, 편성액 대비 국비 부족수령이나 초과수령이 실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시 원포인트(One-Point) 추경을 통해 세출재원을 증감조정 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1〉 기초연금 지급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137,124) 1,366,964	(×12,872) 15,552	(×1,149,997) 1,382,516	
자치단체 경상보조	(×1,137,124) 1,366,964	(×12,872) 15,552	(×1,149,997) 1,382,516	○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 : 155억 5,200만원 (국비 128억 7,200만원 포함)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국비)**는 기정예산(1,780억 7,900만원)보다 107억 6,300만원(국비 51억 1,900만원, 시비 56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50:35.5:14.5의 비율로 매칭

3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3638 ('17. 7.10) “2017년 기초연금 하반기 집행 소요액 조사”

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³⁷⁾ 사업 세부내역에 **국고보조사업**과 **시비추가사업**이 상존하는 바,³⁸⁾

- 금번 추경안은 ① '17년 6월, 보건복지부가 정부추경에 따라 서울시에 대한 국비교부액을 당초 내시액(884억 4,900만원)보다 51억 1,900만원 증액된 936억 900만원으로 변경 가내시함에 따라³⁹⁾ **국고보조사업**에 국비 추가교부액(51억 1,900만원)과 시비 대응분(36억 4,300만원)을 증액하고, ② **시비추가사업**도 대상자가 증가되어 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시비 20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동 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장애인활동보조 일자리를 194개 확대하고, **시비추가사업**은 대상자가 당초 매월 2,084명에서 2,14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증가하게 된 것으로 확인됨

37)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7081 ('17. 6.20)

38)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17. 7), p.68~p.69

■ 사업지원대상 : 만 6세~65세 미만의 1~3등급의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없음)

- **국고보조사업** : 1~3등급 장애인으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시비추가사업** :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국고지원 탈락 1등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 220점 미만인 자, 시설퇴소 장애인

3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4029 ('17. 6.19) "2017회계연도 추경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 급여) 가내시(안) 통보"

■ 2017년도 활동지원급여 변경 가내시 (서울시)

- 총 사업량 : 11,051명 (당초 내시 대비 **194명 증가**)

- 국고보조금 : 936억 900만원 (당초 내비 대비 51억 1,900만원 증가)

- 지방비(구비 포함) : 936억 900만원 (당초 내시 대비 51억 1,900만원 증가)

〈표 3-12〉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국비) 추경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88,490,000) 178,079,820	(×5,119,027) 10,763,774	(×93,609,027) 188,843,594	
사무관리비	750	-	75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900	-	3,900	
사회복지 사업보조	30,000	-	3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88,490,000) 178,045,170	(×5,119,027) 10,763,774	(×93,609,027) 188,808,944	○국고보조사업 - 보건복지부 일자리추경 가내시에 따른 증액조정 (194명) : 87억 6,300만원 (국비 51억 1,900만원 포함) 증액 ○시비추가사업 - 대상자 매월 63명 추가 : 20억원 증액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소관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기정 예산(801억 7,200만원)보다 88억 3,100만원(국비 40억 3,800만원, 시비 47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동 사업은 정부추경과 연계된 보건복지부 가내시('17. 6)⁴⁰에 따라 국비와 시비대응분을 증액편성 하고자 하는 것이나, 정부 추경안에 6개월분을 편성한 보건복지부와 달리, 서울시 사업주 관부서는 금번 추경을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4개월분만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40)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3541 ('17. 6.12)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경예산(안) 관련 수요 조사”

- 동 사업의 경우,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 서울시로 실제 교부될 국비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시·도별 수요조사('17. 6) 결과뿐만 아니라 정부추경안에 대한 국회의결결과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어 필요시 별도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에 대한 증감조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3〉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36,516) 80,172	(×4,038) 8,831	(×40,554) 89,004	
사무관리비	3	-	3	
사회복지 사업보조	(×900) 3,000	(×70) 236	(×970) 3,236	○수당 증액분 1,180명 (4개월) : 2억 3,6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5,616) 77,169	(×3,967) 8,595	(×39,584) 85,765	○신규 사업량 4,500명 (4개월) : 32억 9,600만원 ○수당 증액분 39,952명(4개월) : 51억 9,300만원 ○신규전담인력 30명(4개월) : 1억 500만원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소관 **국가 암검진** 사업은 기정예산(77억 1,000만원)보다 55억 5,100만원(국비 25억 6,200만원, 시비 29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30:35:35의 비율로 매칭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추경안에 암검진비 누적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국비가 반영되어 금번 추경을 통해 서울시로 추가 교부될 것으로 유선 협의된 국비와 이에 대응편성이 필요한 시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수검인원 증가 및 검진단가 상승 등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세출재원의 한정성 등으로 수요보다 부족편성 되어 '17년도 5월말을 기준으로 94억 2,800만원의 암검진비가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요예산의 증액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4〉 국가 암검진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3,558) 7,710	(×2,562) 5,551	(×6,120) 13,261	
자치단체 경상보조	(×3,558) 7,710	(×2,562) 5,551	(×6,120) 13,261	○ 국가 5대암 검진비 미지급금 : 55억 5,100만원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소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어린이통학차량 중 소형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자 800명에게 보조금(5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40억원(국비 20억원 포함)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17년 6월, 환경부는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동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서울시 등에 통보한 바, 41) 사업주관

부서는 환경부와 유선 협의된 국비(20억원)와 이에 대한 시비대응분(20억원)을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임에도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시점('17. 7.12)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주관부서로서도 환경부 지침이 마련된 후 '17년 8월에서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42)
- 동 사업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경안의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소요예산의 회계연도내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요예산의 편성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5〉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	(×2,000) 4,000	(×2,000) 4,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	(×2,000) 4,000	(×2,000) 4,000	○ 어린이 통학차량 800대 LPG차 전환지원 (대당 500만원) : 40억원 (국비 20억원 포함)

41) 환경부, 교통환경과-666 ('17. 6. 2) "2017년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국고보조) 추경예산 신청 안내"

42)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17. 7), p.108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기정예산(171억원)보다 34억 5,000만원(국비 23억원, 시비 1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50:25:25의 비율로 매칭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추경안에 하반기 사업수요 증가를 예측하여 국비를 편성한 것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이메일 및 문자로 통보된 국비 추가교부액에 근거하여 시비대응분까지 증액하고자 하는 것인 바,
- 동 사업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소요예산이 확보될 필요성은 있으나, 중앙정부의 확정적인 내시가 없는 현 시점에는 실제 국비 교부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16〉 긴급복지지원사업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1,400) 17,100	(×2,300) 3,450	(×13,700) 20,500	
자치단체 경상보조	(×11,400) 17,100	(×2,300) 3,450	(×13,700) 20,500	○ 위기가구 증가로 생계지원 확대 : 34억 5,000만원 (국비 23억원 포함)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14억 6,500만원(국비 14억원, 시비 6,5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바,

- 동 사업의 경우, '17년 3월, 중소기업청이 명일전통시장, 포방터 시장 등 6개소를 **청년상인 육성사업**⁴³⁾(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⁴⁴⁾ 국비 교부액과 시비대응분을 신규편성 하려는 것임

〈표 3-17〉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	(×1,400) 1,465	(×1,400) 1,465	
자치단체 경상보조	-	(×1,400) 1,465	(×1,400) 1,465	○ 중소기업청 방침에 따라 점포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

〈표 3-18〉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장명	육성점포수	지원예산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56	1,549	1,400	65	83
명일전통시장	10	290	250	24	16
수유시장	10	250	250	-	-
포방터시장	5	175	125	-	50
뚝도시장	10	250	250	-	-
대림시장	6	209	150	41	17
남대문시장	15	375	375	-	-

43)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에 대하여 임차료,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원(점포당 최대 2,500만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17년도에 6개 시장, 56개 점포가 선정됨

44)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624 ('17. 3. 17) “2017년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선정결과 및 지원 금액 통보”

〈표 3-19〉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대응편성 사업현황(10억원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액	국비		추경안
				국비	시비	
복지본부	의료급여사업	(×488,401) 978,864	88,763	44,381	44,381	(×532,783) 1,067,627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승강장비상문 개선사업	(×3,926) 14,686	32,154	18,374	13,780	(×22,300) 46,840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	(×28,853) 58,044	25,180	12,590	12,590	(×41,443) 83,22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국비)	(×58,557) 182,612	16,483	5,608	10,875	(×64,165) 199,096
복지본부	기초연금 지급	(×1,137,124) 1,366,964	15,522	12,872	2,679	(×1,149,997) 1,382,516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국비)	(×88,490) 178,079	10,763	5,119	5,644	(×93,609) 188,843
"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36,516) 80,172	8,831	4,038	4,793	(×40,554) 89,004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국비)	(×17,440) 131,733	6,775	2,572	4,202	(×20,013) 138,508
시민건강국	국가암검진	(×3,558) 7,710	5,551	2,562	2,989	(×6,120) 13,261
기후환경본부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	4,000	2,000	2,000	(×2,000) 4,000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19,928) 34,874	3,626	2,072	1,554	(×22,000) 38,500
문화본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4,480) 22,747	3,576	2,475	1,100	(×16,956) 26,324
복지본부	긴급복지지원사업	(×11,400) 17,100	3,450	2,300	1,150	(×13,700) 20,550
주택건축국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145,784) 213,816	2,886	1,968	918	(×147,752) 216,703
문화본부	풍납토성 복원	(×40,000) 57,142	2,857	2,000	857	(×42,000) 60,000
복지본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급여(국비)	(×441,142) 655,703	2,813	1,918	895	(×443,060) 658,516
기후환경본부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2,760) 5,820	2,400	1,200	1,200	(×3,960) 8,220
시민건강국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1,532) 3,574	2,000	1,000	1,000	(×2,532) 5,57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국비)	(×6,670) 38,969	1,824	784	1,040	(×7,455) 40,793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61) 722	1,499	749	749	(×1,110) 2,221
복지본부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 12,175	1,469	404	1,064	(×404) 13,644
경제진흥본부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	1,465	1,400	65	(×1,400) 1,465
푸른도시국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 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국비	(×329) 472	1,398	824	574	(×1,153) 1,871
복지본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종합(국비)	(×4,424) 6,636	1,177	785	392	(×5,209) 7,813

-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편성된 국비가 감액교부 되거나 미교부 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국비에 대응편성된 시비 또한 불용되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는 바, 예산편성단계부터 국비의 교부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주의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추경안의 경우,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국비 및 대응편성이 필요한 시비를 선제적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심사요청한 것이나,

-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시점('17. 7.12)까지 정부추경에 대한 국회의결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가내시조차 없이 단순히 유선 등을 통해 구두 협의된 내용에 근거하여 증액편성을 요청하고 있어 회계연도중 실제 교부될 국비 규모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사업주관부서는 회계연도중 국비교부액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내시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필요시 별도 추경을 통해 기 편성된 국비와 이에 대응편성된 시비를 적기에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시비 증액

- 평생교육국 소관 3개 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법정전출금을 편성요청한 바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취득세를 비롯한 시세수입이 당초보다 초과수납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45) 및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46)에 근거하여 법정전출금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지방세 전출**(2,163억 3,100만원), **담배소비세 전출**(726억 8,2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2,995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0〉 추경예산안중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지방세 전출	1,110,455	216,331	1,326,787	•'16년도 시세 정산금 216,331
담배소비세 전출	285,414	72,682	358,097	•'16년도 시세 정산금 72,682
지방교육세 전출	1,361,333	299,507	1,660,840	•'16년도 시세 정산금 299,507

45) 「지방세법」 제151조에 근거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20%, 등록면허세액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 43.99%, 주민세 균등분세액 25%, 재산세액 20%, 자동차세액 30%이며 지방세전출은 지방세(보통세) 시세총액의 10%를 재원으로 함 (※ 단,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특별시분 재산세 제외)

46)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⁴⁷⁾에 따라 보통세 징수액의 22.6%를 재원으로 25개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로
- 금번 추경에서는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보통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4,651억 2,600만원을 증액하고, 지난 '10회계연도에 초과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고자 △415억 8,9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235억 3,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21〉 조정교부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자 치 구 조 정 교 부 금	2,644,425	423,537	3,067,963	'17년 조정교부금 증가액 423,537 - '16년도 결산차액 465,126 - '10년 초과교부금 정산(최종) △41,589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소관 **공사전출금**은 당초 기정예산(794억 3,300만원)보다 2,400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 서울시는 당초 본예산에 '17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예상액 6,89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17년도중 상환일정이 도래한 도시철도공채(6,117억 3,300만원)⁴⁸⁾중 지하철 양공사로 배분된 공채(794억 3,300만원⁴⁹⁾)

47)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전출하고자 **공사전출금**에 794억 3,3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⁵⁰⁾

- 금번 추경예산안의 사업별설명서에는 ① 안전·서비스 확충으로 인한 재정 소요, ②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운임수준, ③ 공익서비스 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17년도에 발행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배분하여 공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증액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⁵¹⁾

-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조정 요청된 소요예산(2,400억원)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면, '17년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1,500억원을 상환하고, 차량기지 개량 등을 위한 **자본투자비** 90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검토되는 바,
 - **단기차입금** 1,500억원 상환의 경우, 부족재원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고 단기차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후 금번 추경을 통해 **공사·공단 등 용자금**을 증액편성함으로써 사후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시각에서는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로 인식될 수 있어 향후 유사한 용자금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8) 2010년에 발행된 것임

49) '10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액(6,117억 3,300만원)중 기관별 배분액

-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 : 5,323억원
- 지하철 양공사 : 794억 3,300만원
 - 서울메트로 : 606억 8,200만원
 - 도시철도공사 : 187억 5,100만원

50) ①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2017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16.11), p.105

② 서울시, 교통정책과-29668 ('16.12.30) “2017년도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

51)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17. 7), p.78

〈표 3-22〉 공사전출금 증액편성분 활용방안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비고
계	2,400	
단기차입금상환	1,500	○ '17.12.15. 만기
자본투자비	900	
건물	98	○ 차량기지 개량 등
선로설비	364	○ 노후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 개량 등
전로설비	394	○ 광전송시스템 개량, 전기설비 보완공사 등
기계장치	44	○ 전동차정비용 노후 기계장치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2,4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증액조정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사업별설명서상 기재내용이 대단히 간략하여 사업별설명서만으로 소요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 향후 사업주관부서는 사업별설명서를 부족하게 기재하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3〉 공사전출금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79,433	240,000	319,433	
공사·공단 등 응자금	79,433	240,000	319,433	○ 도시철도 공채매각 대금 : 2,400억원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준공영제 도입('04. 7) 이후 버스업체 운송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1,973억 1,100만원)보다 959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매년 본예산 편성시 세출재원의 한정성 등으로 소요 예산이 수요보다 부족편성 되어 미지급액이 발생되고 있어 지난 '12년도에는 500억원, '14년도에는 450억원, '16년도에는 1,000억원이 추경으로 증액편성된 사례가 있음

- 금년도의 경우, 이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누적 미지급액(3,180억원)과 당해연도분 운송적자(2,432억원)를 포함하여 총 5,612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1,973억원만 본예산에 편성되어 이를 기준할 경우, '17년도 재정지원 부족분은 총 3,639억원에 이를 것으로 검토됨

- 서울시가 지급하지 못한 재정지원 부족분은 '10년도부터 버스조합명의로 대출을 받아 우선 충당하고, 서울시가 대출액과 이자비용을 상환하고 있어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를 조기에 해소할 것을 요구한 바,

- 사업주관부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959억원을 증액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누적 미지급액을 해소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3-24〉 '17년도 재정지원 부족분(누적 미지급액) 발생현황

(단위 : 억원)

'17년도 재정소요액			'17년도 예산액 (본예산) (D)	재정지원 부족분 (누적 미지급액) (A)-(D)
총 재정소요액 (A)=(B)+(C)	과년도 누적미지급액 (B)	당해연도분 운송적자 (C)		
5,612	3,180	2,432	1,973	3,639

〈표 3-25〉 시내버스 재정지원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97,311	95,900	293,211	
운수업계 보조금	197,300	95,900	293,200	○ 시내버스 재정지원 : 959억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	-	11	

- 재무국 세제과 소관 **재정보전금**은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6조52) 및 제27조53)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 중 특별시분재산세 전액

52)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6조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53)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7조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 ① 제26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과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⁵⁴)에 따라 2001년 폐지된 자동 차분 면허세에 대한 세입감소분을 자치구에 균등 교부하는 것임

- 금번 추경에서는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특별시분재산세 결산분 558억 2,300만원을 자치구로 전출하고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26〉 재정보전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재정보전금	1,054,832	55,823	1,110,655	'16년 재정보전금 증가액 55,823 - '16년도 특별시분재산세 정산결과 55,823 - 면허세 보전금 정산분 -

- 재무국 세무과 소관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제5조⁵⁵)에 따라 매월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납입한 시세에 대한 일종의 처리비로서 납입액의 3%를 각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경비임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54)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분 및 2003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 55)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제5조(징수교부금)
 -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금번 추경안을 통하여 2016년도 시세 초과징수분의 3%, 529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정산하고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⁵⁶⁾

〈표 3-27〉 시세징수교부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징수교부금	325,071	52,918	377,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시세 초과징수 정산분 52,918 : [시세징수총액(11,808,663) - 본예산 기준 징수교부금 지급대상(10,044,720)] × 3%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00억원을 증액 하고자 전출금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금번 추경을 통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당초보다 500억원 증액될 경우, 시설자금(200억원 증)과 긴급자영업 용자자금(300억원 증)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확인됨⁵⁷⁾

〈표 3-28〉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용자계획		비 고
	당 초	변 경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900	2,400	500억원 증
시 설 자 금	500	700	200억원 증
긴 급 자 영 업 자 금	600	900	300억원 증
경 영 안 정 화 자 금	590	590	
기 술 형 창 업 기 업 자 금	100	100	
개 성 공 단 입 주 기 업 자 금	10	10	
재 해 중 소 기 업 자 금	100	100	

56) 징수교부금 총액 : (시세증수분-본예산 기준 징수교부금 지급대상) × 3%

※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행분자동차세, 38세금징수와 징수액,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57) 소상공인지원과-5181 (2017. 7.14.) “17년 1회 추경관련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 일반 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전출금 443억 8,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전출금은 국·시비 50:50으로 편성되는 의료급여사업의 분담비를 맞추기 위해 우선적인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부추경안에 국비가 편성된 것이라고 하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국비 내시액을 임의로 추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정부추경에 따라 대응 편성될 시비를 선제적으로 편성하여 해당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서울시로 교부되는 실제 국비 규모에 유동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비 교부액은 물론 대응편성되는 시비에 대한 산출근거도 불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400억원 이상의 시비를 선제적으로 대응편성하기 보다는 국비 내시 규모가 파악된 이후 시비를 대응 편성하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하남선(5호선 연장)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 시설특별회계)** 사업은 기정예산(118억 5,900만원)보다 14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인바,
- 동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강일역(5호선) 신설공사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⁵⁸⁾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58) ① 서울시, 교통정책과-25031 ('16.11. 8) “5호선(하남선) 연장사업 SH부담금 납부 관련 회신”

②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4699 ('16.11.19) “하남선(5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SH부담금 납부 관련 의견 회신”

〈표 3-29〉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1,859) 11,859	(×-) 14,180	(×11,859) 26,039	
시 설 비	(×11,299) 11,299	(×-) 13,600	(×11,299) 24,899	○ 공사비 : 136억원 - 토목 : 93억원 - 궤도·시스템 : 43억원
감 리 비	(×480) 480	(×-) 550	(×480) 1,030	○ 시스템 감리 : 5억 5,000만원
시 설 부 대 비	(×80) 80	(×-) 30	(×80) 110	○ 조달수수료, 자문 및 출장여비 : 3,000만원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추진** 사업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100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17. 7.12)한 이후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59)
- 동 사업이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신규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공모, 심사기준, 선정방법 등을 구체화 시켜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9) 일자리노동정책관-13018 ('17. 7.17),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표 3-30〉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추진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	10,000	1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10,000	10,000	○ 사업비 : 100억원 (5억원 × 20개 자치구)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소관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은 '16년 12월 신설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⁶⁰⁾ 및 '17년 7월 발령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⁶¹⁾에 근거하여 금년도 7월분부터 CNG차량에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기정예산(83억원)보다 95억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것임
- CNG차량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유차량에서 천연가스 차량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요예산의 증액조정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경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실제 '16년 12월에 신설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을 '17년 6월 3일에 신설된 것으로 부정확하게 기재하고 있

6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2.>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6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74호) 부칙 제2조(천연가스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버스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은 2017년 7월 1일부터 충전한 내역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어⁶²⁾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바, 향후 사업주관부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31〉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8,300	9,500	17,800	
운수업계 보조	8,300	9,500	17,800	○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 : 95억원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소관 **서울에너지공사 전출금**은 80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16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⁶³⁾ 부칙 제2조 제2항⁶⁴⁾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등기일('16.12.21)이 속한 회계연도의 말일('16.12.31)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된 바,

62)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17. 7), p.86

63) 서울시의회는 제26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16. 6.17)하였음

64)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263호, '16. 7.14)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②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공사 설립 등기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말일에 폐지한다.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체결한 상환약정⁶⁵⁾에 따라 기 폐지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1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80억 8,000만원)을 서울에너지공사에 교부하여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황에 집행하도록 하고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3-32〉 서울에너지공사 전출금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	8,080	8,08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	8,080	8,08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 : 80억 8,000만원

-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소관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개선 공사를 추진하고자 기정예산(59억 5,000만원) 대비 71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대공원은 지난 '16년 12월 황새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시장방침을 통해 동물원 관람객 입장중지를 결정한 바 있고, '17년 6월에는 국가 AI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조류사 전체 관람을 중지한 바 있어⁶⁶⁾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소요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65) 「2017년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 용자(상환) 약정서」 제2조 ③ 2016회계연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일반회계로 세입금처리 후 2017년에 전액 재정투융자기금에 상환한다.

66) ①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5489 ('16.12.23) “AI 확산 방지를 위한 동물원 휴장 계획”
 ② 서울대공원, 홍보전연구실-2835 ('17. 6. 7) “AI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강화 계획”

〈표 3-33〉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5,950	7,100	13,050	
시 설 비	5,950	7,100	13,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새마을 긴급개선공사 : 1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방사장 철거 및 개선 : 8억 7,900만원 - 건축물, 전기, 기계설비 등 : 10억 2,000만원 ○ 큰물새장 긴급개선공사 : 2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철창 및 폰드정비 : 15억원 - 격리내실설치 및 기타 : 13억원 ○ 공작마을 긴급개선공사 : 2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이어로프 및 그물망교체 12억원 - 주탑-옹벽 보강 등 기타 12억원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은 '17년 3월 중소기업청이 주차환경개선 사업대상으로 선정한⁶⁷⁾ 3개 시장(강동명일시장, 종로금천교시장, 관악신사시장)에 대해 시비 부담분을 지원하고자 기정예산(52억 5,400만원)보다 40억 7,800만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60:24:16의 비율로 매칭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16년도까지는 국비를 서울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 '17년도에는 중앙정부 예산에 신설된 예산과목인 **지분취득비**⁶⁸⁾로 국비가 편성된 바, 행정자치부 기준상 대응하는 예산과목 부재 등으로 인해 서울시 예산에 국비를 미편성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자치구로 직접 교부하게 된 것으로 확인됨

67)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561 ('17. 3.13) "2017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통보 및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68)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정부예산 예산과목중 **지분취득비**가 신설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의 증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 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추경으로 증액편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임에도 '17년도 본예산 심사시 감액된⁶⁹⁾ 동 세부사업에 대해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조정을 요청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34〉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28) 5,254	4,078	(×128) 9,333	
사무관리비	5	-	5	
자치단체 경상보조	(×128) 177	-	(×128) 177	
자치단체 자본보조	5,072	4,078	9,150	○ 강동명일시장 : 20억 6,200만원 (국비 51억 5,600만원) ○ 종로금천교시장 : 16억 8,100만원 (국비 50억 4,400만원) ○ 관악신사시장 : 3억 3,400만원 (국비 7억 1,700만원) ※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자치구로 직접 교부

- 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과 소관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는 한강공원내 저화질 CCTV 298대 중 116대가 기정예산(29억 8,900만원)으로 기추진 되고 있었으나, 금번 추경을 통해 향후 교체하기로 계획하였던 저화질 CCTV 182대 등을 추가 교체하여 한강공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시설비 12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69) 당초 제출된 국비 98억 900만원에 대해 △96억 8,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800만원으로 조정함
바 있음

-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소관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는 지난 '10년 6월 구매한 기존 전기순찰차를 교체하기 위해 순찰 및 계도·단속용 에코카 11대를 구매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현재 한강사업본부 11개 센터가 운용하고 있는 전기순찰차의 경우, 생산업체 부도로 수리,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어 전기카트 형태의 에코카로 교체하여 순찰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 기존 전치순찰차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수리,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에코카 11대를 일시에 구매하여 운용하기 보다는 시범운용후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한강사업본부의 전기순찰차 운행불가 실태에 의하면 기존 전기순찰차 전체가 운행불가 상태로 사료되지 않는 바 추경을 통하여 에코카 11대분 구매비용을 편성하기에 앞서 전용 등 내부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시범 운용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는 노후 순찰선을 대체하는 선박 1척을 구매하고자 기정예산(16억 6,400만원)보다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순찰선 3척중 1척이 '17년 9월 매각(폐선) 예정으로 노후 순찰선 대체선박 구매로 한강 수상안전 관리 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 '15년 9월⁷⁰⁾부터 노후 순찰선에 대한 매각계획이 수립되어 '17년 본예산 편성시 관공선에 대한 예산확보가 우선 고려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적기 반영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인 바,
- 추가경정예산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개시이후 예측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를 통한 관공선 구매(건조) 조달구매 현황을 검토한 결과, 우수 품질의 관공선을 조달받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1~2개월 이상 소요)하고 있고, 발주 후 수령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을 통해 순찰선 구매 예산을 반영하여 8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 입찰을 추진하더라도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소요예산이 이월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월을 전제한 사업이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 소요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70) 수상안전과-1229 ('15. 9.22) “관공선 매각 추진계획”

〈표 3-35〉 시비 증액편성 사업현황 (10억원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증감사유
행정국	조정교부금	2,644,425	423,537	3,067,963	'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정산
평생교육국	지방교육세 전출	1,361,333	299,507	1,660,840	'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정산
도시교통본부	공사 전출금	79,433	240,000	319,433	도시철도공채 추가배분으로 공사 재정부담 완화
평생교육국	지방세 전출	1,110,455	216,331	1,326,787	'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정산
도시교통본부	시내버스 재정지원	197,311	95,900	293,211	시내버스 재정지원 누적 미지급액 일부해소
평생교육국	담배소비세 전출	285,414	72,682	358,097	'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정산
재무국	재정보전금	1,054,832	55,823	1,110,655	'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정산
재무국	시세징수교부금	325,071	52,918	377,989	'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정산
복지본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488,401	44,381	532,783	기금전출금 편성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859) 11,859	14,180	(×11,859) 26,039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익자부담금을 납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	10,000	10,000	자치구 공모를 통해 일자리사업 발굴·추진
도시교통본부	운수업계 (버스) 유가보조금	8,300	9,500	17,800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추가지원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전출금	-	8,080	8,080	상환약정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 교부
푸른도시국	공원 안전 시설 보수 및 정비	5,950	7,100	13,050	시 재발방지 등을 위한 긴급개선 공사비
소방재난본부	인력 운영비	540,097	4,990	545,087	소방공무원 정원증가, 직급조정분 인건비 지원
경제진흥본부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128) 5,254	4,078	(×128) 9,333	중소기업청 공모선정에 따른 시비 부담분 편성
푸른도시국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5,497	3,745	9,242	보상비 예산 부족
안전총괄본부	보도상장애인 안전 시설 정비	2,220	3,500	5,720	장애인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
한강사업본부	한강 함상공원 조성	6,911	3,316	10,227	부족 사업비 확보
복지본부	베이비부머 보람 일자리 지원	4,006	3,000	7,006	신규일자리 1,000개 지원
복지본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8,242	2,480	80,722	종합사회복지관 부족인력 충원 지원
경제진흥본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430	1,492	3,922	중소기업청 공모선정에 따른 시비 부담분 편성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기전시설유지관	2,989	1,200	4,189	저성능 CCTV 교체를 통해 안전사고 대처능력 제고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38,113	1,119	139,23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
평생교육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7,641	1,000	8,641	마을교사 인건비 상향유도 등

※ 재무활동 및 예비비 제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 별도 표기)

(4)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증액편성

-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중 **도로함몰 예방사업**을 포함한 5개 세부사업은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증액편성을 요청한 사업임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항71) 등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바, 금번 추경안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증액요청된 5개 세부사업은 대상사업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36〉 소방안전교부세 증액편성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액	소방안전교부세		추경안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소방안전교부세	시비		
안전총괄본부	도로함몰 예방 사업	(소방-) 5,220	4,500	971	3,528	(소방971) 9,720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사업
소방재난본부	119 안전 센터 힐링 쉼터 설치	(소방-) -	1,540	1,540	-	(소방1,540) 1,540	소방관서 보건 안전관리 강화
"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소방-) -	200	200	-	(소방200) 200	소방관서 보건 안전관리 강화
"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소방-) 1,770	-	509	△509	(소방509) 1,770	노후 소방관서 개선
"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 관리	(소방-) 1,324	-	664	△664	(소방664) 1,324	정보통신장비 교체·보강

- 71)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분야: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각 호 생략)
 - ② 시·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함몰 예방사업**은 기정예산(52억 2,000만원)보다 45억원(소방안전교부세 9억 7,100만원 포함)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당초 예측치(0.3개/km)보다 실제 동공발생(0.5개/km)이 증가되어 동공 복구를 위한 추가재원을 확보하고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⁷²⁾
- 동 사업의 경우, 도로함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나, '17년 6월말 기준 시설비 예산현액(83억 8,000만원⁷³⁾)의 48.4%, 40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월까지 시설비 예산현액의 70.0%를 집행할 예정으로 확인되는 바,⁷⁴⁾
- 예산집행현황을 고려하면 추경예산안에서 과다한 규모의 시설비가 증액편성된 것일 수 있어 회계연도중 집행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의 적정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7〉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소방-) 5,220	(소방971) 4,500	(소방971) 9,720	
사무관리비	20	-	20	
시 설 비	(소방-) 5,200	(소방971) 4,500	(소방971) 9,700	○ 동공 복구비 : 45억원

72)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17. 7), p.168

73) 시설비 예산현액(83억 8,000만원) = 전년도 명시이월액(31억 8,000만원) + '17년도 본예산(52억원)

74) 서울시, 안전총괄과-9445 ('17. 7.14)

3 세출예산 감액 조정요청 관련 검토

(1) 국비감액 (국비만 감액요청)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소관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는 국고보조금 미확보에 따라 기정예산(1,085억원)중 △620억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서울시가 '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16년 4월 국토교통부에 국고보조금(620억원)을 요청하였으나⁷⁵⁾ '16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미반영 통보되어⁷⁶⁾ 금번 추경을 통해 기편성된 국고보조금 620억원 전액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 지하철 1호선~4호선의 경우,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피로도가 진행되어 지하철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철도공채 등을 활용하여 노후시설재투자계획⁷⁷⁾을 추진 중이나,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국비지원이 지속적으로 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난 '16년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기 편성하였던 국비 400억원을 추경으로 전액 감액 조정한 사례가 있는 바, 서울시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의지 표현으로 매 회계연도 국비를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75)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8734 ('16. 4.28) "2017년 도시철도 부문 국비 예산편성 요청"

76)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3043 ('16.12.7.) "17년 예산 확정내시 알림(출연금 및 국고보조금)"

77)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3751 ('10.11.11)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소관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는 전액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297억 500만원을 서울시로 교부하는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⁷⁸⁾ 기편성된 국비 496억 3,300만원중 △239억 2,7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 2030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당시 국토교통부에 예산을 요청함에 있어 공문시행 등의 행정절차 없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와 구두 협의에 근거하여 국비 469억원을 편성한 바,
- 국고보조금 요청 및 확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메뉴얼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향후 공식적인 내시 등을 통해 국비교부가 확실시되는 교부액에 한정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합리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38〉 국비감액에 따른 추경편성요청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사유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2,000) 108,500	(×△62,000) △62,000	(×0) 46,500	국비 미확보
주택건축국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49,633) 49,633	(×△23,927) △23,927	(×25,705) 25,705	”

7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942 ('17. 4.28) “2017년 임대주택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2) 국비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시비 연계 조정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40:60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381억 600만원)중 국비 38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95억 3,8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당초 저상버스 413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국비 152억 4,200만원을 포함한 38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7년 2월,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310대분, 114억 2,600만원을 배분 통보한 바⁷⁹⁾
- 금번 추경을 통하여 기편성된 예산액중 국비 △38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대응 편성된 시비 △57억 2,300만원도 감액편성 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비매칭 사업의 경우, 당초 편성된 것보다 국비가 감액 교부되면 회계연도중 감추경이 불가피하며, 감액조정하지 못한 경우 '재원 없는 불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전에 소관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선행하고, 국비 내시결과를 근거로 실제 교부 가능한 국비에 한정하여 시비가 대응편성 되어야 할 것임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소관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은 한양도성 성벽 훼손을 방지하고 점검통로 및 보수 공간 확보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79)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519('17.02.24.) "2017년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국고보조금 배분 알림

○ 국·시비 70:30의 비율로 26억 4,500만원(국비 18억 5,100만원, 시비 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를 교부받지 못하여 국비는 물론 대응 편성된 시비 전액을 감액편성요청 한 것임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에서 의정부간 연결도로를 확충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를 50:50의 비율로 매칭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8억 3,100만원(국비 14억 1,500만원, 시비 1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국토교통부가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공사의 낙찰차액 등을 고려하여 국비를 당초 14억 1,500만원보다 △5억 7,500만원 감액된 8억 4,000만원으로 조정(한 바⁸⁰⁾), 대응 편성된 시비도 △5억 7,500만원 감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그러나 동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이미 지난 '16년 11월 국비 규모를 8억 4,000만원으로 통보하여 '17년도 예산편성시 실제 국비 내시액을 근거로 시비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 교부 가능성이 없는 국비 규모를 근거로 시비 대응분까지 편성한 바,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공유하지 않는 예산편성 및 확보사례로 판단됨

80)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3854 ('16.11.18.) “총사업비 자율조정 승인(상도교~호장교 광역도로)”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소관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설치**는 서대문구 연희동과 마포구 연남동일대가 집중호우시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침수방지를 위해 망원배수구역내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자 국비와 시비를 50:50의 비율로 매칭하여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회계연도 개시이후('17. 5) 물재생계획과로 부터 망원배수구역에 펌프장 설치와 하수관로 확대 설치 사업을 우선 시행 후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⁸¹⁾을 제시받아,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한 소요예산 전액(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81) 물재생계획과-6169 ('17. 5. 2.)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검토의견 회신

〈표 3-39〉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증·감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국비		추경(안)
				국비	시비	
도시교통본부	저상버스 도입	(×15,242) 38,106	△9,538	△3,815	△5,723	(×11,426) 28,567
문화본부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1,851) 2,645	△2,645	△1,851	△794	(×0) 0
안전총괄본부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1,415) 2,831	△1,150	△575	△575	(×840) 1,681
물순환안전국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설치	(×500) 1,000	△1,000	△500	△500	(×0) 0
복지본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	(×552) 1,450	△196	△10	△186	(×542) 1,254
시민건강국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3,971) 6,327	△333	△256	△77	(×3,715) 5,994
복지본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4,346) 7,106	△265	△177	△88	(×4,169) 6,841
문화본부	한양도성 학술 조사 및 연구	(×175) 370	△250	△175	75	(×0) 120
시민건강국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363) 776	△369	△184	△185	(×178) 406
복지본부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운영	(×300) 733	△200	△100	△100	(×200) 533
복지본부	자활근로사업 지원	(×33,137) 48,600	△146	△100	△46	(×33,037) 48,454
기후환경본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	(×210) 303	△90	△63	△27	(×147) 213
시민건강국	재가암환자 관리	(×161) 241	△58	△39	△19	(×122) 183

(3) 사업량 조정 및 불용 예상액 감액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는 2022년까지 여의도부터 관악구를 연결하는 7.76km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60억원을 포함하여 646억 5,4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임
- 동 사업의 '17년 목표공정율은 6.89%로 공정율을 고려하여 시설비 636억 5,600만원중 △320억원(건설보조금, 보상비)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2017년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전절차 등으로 지연('09.11~현재)되고 있는 바, 동 사업은 사업지체기간이 장기화 되었고, 사업대상지역의 주민숙원 및 교통난 해소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하기 보다는 명시이월을 통하여 재원을 우선 확보하고, 사업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소관 **현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는 서초구 영동1교에서 송파구 북정역까지 정류장 20개소에 대한 버스 중앙 차로를 설치하기 위해 시비 114억원을 편성한 사업임
- 사업주관부서는 사업구간 내 제2염곡지하차로 공사로 이른바 '동시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현릉로 확장공사와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어 사업시기를 금년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하고자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 그러나 동일 구간, 중복공사라 하나 현릉로 확장공사는 '17년 5월에 투자심사를 받아 ① 사전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사유로 '18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② 확장공사의 사업구간이 내곡IC에서 현릉IC까지 1.3km로서 현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 공사구간 9.7km중 일부 구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은 LH공사측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고, 2010년 “현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추진계획 보고” 당시 계획했던 사업비 1km당 12.3억원보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차로 사업비 1km당 20~25억원의 수준에 비해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바,
 - 현실적인 수준으로 공사비가 부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 후 진행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소관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광진구 광장동 307-3번지 일대 미개발 체육시설부지 지하일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45억 1,300만원을 기편성 하였으나

- '17년 4월, 체육정책과가 주차계획과에서 추진하던 주차장 건설을 포함한 미개발부지 전체에 대해 통합계획⁸²⁾을 수립함에 따라 주차장건설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되어 기정예산 전액(△45억 1,300만원)을 감액 요청한 것임

82) 체육정책과-5086(2017.4.18.)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방안 검토회의 결과」”

〈표 3-40〉 시비감액에 따른 추경편성요청 사업현황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사유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선 경전철(민자)	(×16,000) 64,656	(×-) △32,000	(×16,000) 32,656	사업지연으로 인한 감액조정
도시교통본부	현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11,400	△11,400	0	공사 중복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사업시기 연기
복지본부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9,333	△7,827	11,506	사업지연으로 인한 감액조정
도시교통본부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4,513	△4,513	0	사업변경에 따른 감액조정
기획조정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202,208	△3,418	198,790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조정
도시교통본부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3,314	△1,004	2,310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조정
안전총괄본부	상촌고가 보수	800	△800	0	사업중지에 따른 감액조정
도시교통본부	공덕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697	△697	0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조정
안전총괄본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계정)	2,300	△593	1,706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조정

4]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법정경비 등의 정산

-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면 「지방회계법」 제19조83)에 따라 법정 정산 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잉여금은 2조 587억 9,000만원이 발생하여, ① 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 ②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③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 정산 ④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 증수분 정산 ⑤ 지방소비세 증수분에 대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추가 전입 등에 대해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치구 전출**이 필요한 정산분의 경우, '16년도분 조정교부금 4,651억 2,600만원과 '10년도 정산분 △415억 8,900만원 등을 포함한 5,738억 6,800만원이 자치구로 전출되어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교육청 전출**의 경우, 보통세 증수에 따른 지방교육세 2,995억 700만원을 포함한 5,885억 2,100만원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 전출되어야 할 것이며

83)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 증수분과 '15회계연도 발생된 정산분의 경우에도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진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경우, 지방소비세 증수분⁸⁴⁾에 해당하는 122억 2,800만원이 진출되어야 하며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증수분이 발생됨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정비계정**(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계정**(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으로 안분되어 정산이 필요할 것이나 동 법정 정산의 경우, '18년도 본예산에 추가하여 정산될 것으로 사료됨

84)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중 취득세 보전분 6% 제외)의 35%

〈표 3-41〉 법정경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금액	근거	재원
	총 계	1,232,996		
자 치 구 전 출	계	573,868		
	조정교부금	423,537	·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시행령 117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시세중 보통세의 22.6% -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정교부금	55,823	· 「지방세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26조 및 제27조 · 「지방세법」 부칙 제8조	· 특별시분 재산세 100% · 면허세 보전분 ('02~) - 01년 전국 면허세 폐지 세수 보전액(2,000억원) × 16.99% ('16년 적용 우리시 안분율)
	징수교부금	52,918	· 「지방세징수법」 제17조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 · 「서울특별시시세징수조례」 제5조	· 시세중 자치구 위임세목의 3% - 취득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계	588,521		
	보통세정산	216,33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 지방교육세 100% · 담배소비세 45% · 보통세 10%
	지방교육세	299,507		
담배소비세	72,682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11,640	· 「지방세법」 제142조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제4조	·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
지역상생발전기금		12,228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 중 취득세 보전분 6% 제외)의 35%
재 산 세	도시지역분	46,739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8조에 근거	·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	· 주택사업특별회계(주거환경정비계정) 전입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사업계정) 전입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계정) 전입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 법정 정산 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⁸⁵⁾에 따라 자치구 교부금 등 법정경비 1조 2,329억 9,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의 50% 이상인 4,129억원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상호 연계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42〉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법정 경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세계잉여 금	법정경비 등						순세계잉여금		
	계	교육청 전출금	자치구 정산금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상생 발전기금	계	감채기금	서울시 가용재원
⑦	⑥=(①+②+③+④+⑤)	①	②	③	④	⑤	⑧=⑦-⑥	⑨=(⑧×0.5이상)	⑩=⑧-⑨
2,058,790	1,232,997	588,521	573,868	46,739	11,640	12,228	825,792	412,900	412,892

85)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⑤ 국비 감액통보 이후 추경안 미반영 사업

- 국고보조금이 서울시로 증액되거나 추가 교부될 경우, 예산서중 예산 총칙 제10조에 근거하여 간주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감액통보될 경우, 추경을 통한 경정 이외에 세입·세출을 감액조정할 방안이 없음

- 따라서 회계연도중 국고보조금 등이 당초 내시규모보다 감액 통보될 경우, 추경으로 세입·세출을 감액조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계연도 결산시 세입결산은 재원없는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세출결산은 ‘재원 없는 불용’이 발생되어 재정운용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통보될 경우, 추경으로 반드시 감액조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소관 **그린카 보급**의 경우, 당초 내시 된 국비(36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나⁸⁶⁾ '17년 4월, 환경부가 국비규모를 303억 6,800만원으로 변경내시한 것으로 확인됨⁸⁷⁾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소관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의 경우에도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3억 7,700만원이 포함된 64억 7,900만원이 기편성 하였으나 회계연도중 환경부가 당초 내시액(53억 7,700만원)⁸⁸⁾을 38억 2,300만원으로 변경내시한 것으로 확인됨⁸⁹⁾

86) 재정관리담당관-13549 ('16.11.18), “국고보조금 가내시 현황”

87) 환경부, 청청대기기획과-180 ('17. 4.12)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2차) 알림”

88) 재정관리담당관-13549 ('16.11.18), “국고보조금 가내시 현황”

89) 환경부, 청청대기기획과-180 ('17. 4.12)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2차) 알림”

- **그린카 보급 및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은** 회계연도중 환경부가 국비를 추가적으로 증액통보 하지 않을 경우, 기통보 된 내시액만 교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그린카 보급**의 경우, 기편성된 국비(365억원)중 61억 3,200만원이 미확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의 경우에도 기편성 된 국비(53억 7,700만원)중 15억 5,400만원이 미확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부가능성이 낮은 국비규모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감액요청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3-43〉 국고보조금 감액통보 이후 추경 미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편성당시 국비내시액	본예산 국비편성액	회계연도개시 이후 변경된 국비내시액	국비미확보 예상액
기후환경본부	그린카보급	36,500	36,500	30,368	△6,132
기후환경본부	그린카 충전 인프라 구축	5,377	5,377	3,823	△1,554

IV. 심사결과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자 : 2017. 7. 21(금)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수정내용 : 별 첨

V.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포함되어 의결된 부대의결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수용하여 줄 것을 촉구

※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부대의결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부기(“혁신교육지구(마을교사지원)”)를 삭제함

VII. 시정요구사항 : 없음

- ◇ 첨부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부. 끝.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28
----------	------------

2017년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내역과 세출예산 과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수정 주요 내용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첨 심사·의결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첨부 :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예결위 심사·의결 내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 정 예 산 안

2017. 7. 2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1. 예산종식 수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출안	수정안																																																																																																
<p>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회계별</th> <th style="width: 30%;">예산액</th> <th style="width: 50%;">일시차입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right;">31,869,840,809</td> <td style="text-align: right;">550,000,000</td> </tr> <tr> <td>일반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22,518,827,027</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000</td> </tr> <tr> <td>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9,351,013,782</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00</td> </tr> <tr> <td>기타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8,561,013,782</td> <td></td> </tr> <tr> <td>(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593,580,862</td> <td></td> </tr> <tr> <td>(2) 교통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241,368,667</td> <td></td> </tr> <tr> <td>(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38,376,613</td> <td></td> </tr> <tr> <td>(4) 주택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671,654,501</td> <td></td> </tr> <tr> <td>(5) 도시개발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268,172,543</td> <td></td> </tr> <tr> <td>(6) 하수도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791,003,670</td> <td></td> </tr> <tr> <td>(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067,662,123</td> <td></td> </tr> <tr> <td>(8)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28,594,003</td> <td></td> </tr> <tr> <td>(9) 소방안전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760,600,800</td> <td></td> </tr> <tr> <td>공기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790,00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00</td> </tr> <tr> <td>(10) 수도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790,00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00</td> </tr> </tbody> </table> <p>제2조~제6조 : 동일</p> <p>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7,305,832천원으로 한다.</p> <p>(1) 일반예비비 : 157,305,832천원</p> <p>(2) 목적예비비 : 20,000,000천원</p> <p style="text-align: center;">- 이하생략 -</p>	회계별	예산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31,869,840,809	550,000,000	일반회계	22,518,827,027	500,000,000	특별회계	9,351,013,782	50,000,000	기타특별회계	8,561,013,782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593,580,862		(2) 교통사업특별회계	1,241,368,667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8,376,613		(4) 주택사업특별회계	1,671,654,501		(5) 도시개발특별회계	1,268,172,543		(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1,003,670		(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67,662,123		(8)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594,003		(9) 소방안전특별회계	760,600,800		공기업특별회계	790,000,000	50,000,000	(10) 수도사업특별회계	790,000,000	50,000,000	<p>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회계별</th> <th style="width: 30%;">예산액</th> <th style="width: 50%;">일시차입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right;">31,869,840,809</td> <td style="text-align: right;">550,000,000</td> </tr> <tr> <td>일반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22,518,827,027</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000</td> </tr> <tr> <td>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9,351,013,782</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00</td> </tr> <tr> <td>기타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8,561,013,782</td> <td></td> </tr> <tr> <td>(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593,580,862</td> <td></td> </tr> <tr> <td>(2) 교통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241,368,667</td> <td></td> </tr> <tr> <td>(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38,376,613</td> <td></td> </tr> <tr> <td>(4) 주택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671,654,501</td> <td></td> </tr> <tr> <td>(5) 도시개발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268,172,543</td> <td></td> </tr> <tr> <td>(6) 하수도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791,003,670</td> <td></td> </tr> <tr> <td>(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067,662,123</td> <td></td> </tr> <tr> <td>(8)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28,594,003</td> <td></td> </tr> <tr> <td>(9) 소방안전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760,600,800</td> <td></td> </tr> <tr> <td>공기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790,00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00</td> </tr> <tr> <td>(10) 수도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790,00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00</td> </tr> </tbody> </table> <p>제2조~제6조 : 동일</p> <p>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4,015,832천원으로 한다.</p> <p>(1) 일반예비비 : 154,015,832천원</p> <p>(2) 목적예비비 : 20,000,000천원</p> <p style="text-align: center;">- 이하생략 -</p>	회계별	예산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31,869,840,809	550,000,000	일반회계	22,518,827,027	500,000,000	특별회계	9,351,013,782	50,000,000	기타특별회계	8,561,013,782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593,580,862		(2) 교통사업특별회계	1,241,368,667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8,376,613		(4) 주택사업특별회계	1,671,654,501		(5) 도시개발특별회계	1,268,172,543		(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1,003,670		(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67,662,123		(8)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594,003		(9) 소방안전특별회계	760,600,800		공기업특별회계	790,000,000	50,000,000	(10) 수도사업특별회계	790,000,000	50,000,000
회계별	예산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31,869,840,809	550,000,000																																																																																															
일반회계	22,518,827,027	500,000,000																																																																																															
특별회계	9,351,013,782	50,000,000																																																																																															
기타특별회계	8,561,013,782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593,580,862																																																																																																
(2) 교통사업특별회계	1,241,368,667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8,376,613																																																																																																
(4) 주택사업특별회계	1,671,654,501																																																																																																
(5) 도시개발특별회계	1,268,172,543																																																																																																
(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1,003,670																																																																																																
(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67,662,123																																																																																																
(8)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594,003																																																																																																
(9) 소방안전특별회계	760,600,800																																																																																																
공기업특별회계	790,000,000	50,000,000																																																																																															
(10) 수도사업특별회계	790,000,000	50,000,000																																																																																															
회계별	예산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31,869,840,809	550,000,000																																																																																															
일반회계	22,518,827,027	500,000,000																																																																																															
특별회계	9,351,013,782	50,000,000																																																																																															
기타특별회계	8,561,013,782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593,580,862																																																																																																
(2) 교통사업특별회계	1,241,368,667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8,376,613																																																																																																
(4) 주택사업특별회계	1,671,654,501																																																																																																
(5) 도시개발특별회계	1,268,172,543																																																																																																
(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1,003,670																																																																																																
(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67,662,123																																																																																																
(8)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594,003																																																																																																
(9) 소방안전특별회계	760,600,800																																																																																																
공기업특별회계	790,000,000	50,000,000																																																																																															
(10) 수도사업특별회계	790,000,000	50,000,000																																																																																															

2. 세입, 세출 수정내역 총괄

□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안	
		소계	증액	감액		
총계	세입	31,869,840,809	-	-	31,869,840,809	
	세출	31,869,840,809	-	3,290,000	△3,290,000	31,869,840,809
일반회계	세입	22,518,827,027	-	-	22,518,827,027	
	세출	22,518,827,027	-	3,290,000	△3,290,000	22,518,827,027
	세입	9,351,013,782	-	-	9,351,013,782	
	세출	9,351,013,782	-	-	9,351,013,782	
	세입	8,561,013,782	-	-	8,561,013,782	
	세출	8,561,013,782	-	-	8,561,013,782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790,000,000	-	-	790,000,000	
	세출	790,000,000	-	-	790,000,000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안
		소계	증액	감액	
계	31,869,840,809	-	-	-	31,869,840,809
일반회계	22,518,827,027	-	-	-	22,518,827,027
기타특별회계	8,561,013,782	-	-	-	8,561,013,78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593,580,862	-	-	-	1,593,580,862
교통사업특별회계	1,241,368,667	-	-	-	1,241,368,667
광역교통시설특별회 계	138,376,613	-	-	-	138,376,613
주택사업특별회계	1,671,654,501	-	-	-	1,671,654,501
도시개발특별회계	1,268,172,543	-	-	-	1,268,172,54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1,003,670	-	-	-	791,003,6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 계	1,067,662,123	-	-	-	1,067,662,123
한강수질개선특별회 계	28,594,003	-	-	-	28,594,003
소방안전특별회계	760,600,800	-	-	-	760,600,800
공기업특별회계	790,000,000	-	-	-	790,000,000
수도사업특별회계	790,000,000	-	-	-	790,000,00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안
		소계	증액	감액	
계	31,869,840,809	-	3,290,000	△3,290,000	31,869,840,809
일반회계	22,518,827,027	-	3,290,000	△3,290,000	22,518,827,027
기타특별회계	8,561,013,782	-	-	-	8,561,013,78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593,580,862	-	-	-	1,593,580,862
교통사업특별회계	1,241,368,667	-	-	-	1,241,368,667
광역교통시설특별회 계	138,376,613	-	-	-	138,376,613
주택사업특별회계	1,671,654,501	-	-	-	1,671,654,501
도시개발특별회계	1,268,172,543	-	-	-	1,268,172,54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1,003,670	-	-	-	791,003,6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 계	1,067,662,123	-	-	-	1,067,662,123
한강수질개선특별회 계	28,594,003	-	-	-	28,594,003
소방안전특별회계	760,600,800	-	-	-	760,600,800
공기업특별회계	790,000,000	-	-	-	790,000,000
수도사업특별회계	790,000,000	-	-	-	790,000,000

□ 기획조정실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기 획 조 정 실			(×262,000) 957,770,592	(×262,000) 954,480,592	△3,290,000	[+ 0건 △ 1건 3,290,000
(예산담당관) 일반예산(예비비)			186,213,022	182,923,022	△3,290,000	
(일반회계) 예비비			177,305,832	174,015,832	△3,290,000	
예비비			177,305,832	174,015,832	△3,290,000	(100-801-01) 일반예비비 ◦ 일반회계 예비비 177,305,832→174,015,832(△3,290,000)

□ 여성가족정책실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여 성 가 족 정 책 실			(×668,401,364) 2,217,695,450	(×668,401,364) 2,217,695,450	(×) 0	[+ 1건 17,000,000 △ 1건 17,000,000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603,205,171) 1,889,058,080	(×603,205,171) 1,889,058,080	(×) 0	
(일반회계) 보육시설 확충			(×19,841,530) 171,926,591	(×19,841,530) 171,926,591	(×) 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8,953,840) 165,450,000	(×18,953,840) 165,450,000	(×) 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임대보증금지원비 27,300,000→10,300,000(△17,0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비 137,700,000→154,700,000(17,000,000)

□ 평생교육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평 생 교 육 국			(×14,118,463) 3,750,728,997	(×14,118,463) 3,750,728,997	0	[+ 0건 △ 0건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3,518,108,733	3,518,108,733	0	
(일반회계) 학교교육 지원			57,767,528	57,767,528	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8,641,390	8,641,390	0	※ 부기 변경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혁신교육지구(마을교사 지원) -> ◦ 혁신교육지구

□ 일자리노동정책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일자리노동정책관			(×14,402,200) 221,467,932	(×14,402,200) 221,507,932	(×0) 40,000	[+ 1건 40,000 △ 0건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5,011,000) 157,846,559	(×5,011,000) 157,846,559	-	
(일반회계) 사회적 일자리 제공			(×5,011,000) 124,943,863	(×5,011,000) 124,943,863	-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10,000,000	10,000,000	-	(100-201-01) 사무관리비 ◦ 사업추진 일자리기획단 운영 0→200,000(200,000) (100-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사업추진비 10,000,000→6,000,000(△4,000,000) (100-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 공간 조성 사업 등 0→3,800,000(3,800,000)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43,200) 31,331,499	(×43,200) 31,371,499	(×0) 40,000	
(일반회계) 근로자 복지 증진			26,659,499	26,699,499	40,000	
노동존중문화 확산			270,000	310,000	4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노동자지원 0→40,000(40,000)

□ 복지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복 지 본 부			(×2,516,072,246) 5,274,407,988	(×2,516,072,246) 5,276,507,988	(×0) 2,100,000	[+ 2건 2,100,000 △ 0건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1,166,782,612) 1,631,967,369	(×1,166,782,612) 1,634,067,369	(×0) 2,100,000	
(일반회계) 치매어르신지원강화			(×2,758,362) 161,945,363	(×2,758,362) 163,945,963	(×0) 2,000,000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11,506,947	13,506,947	2,000,000	(100-401-01) 시설비 ◦ 시설비(부기삭제) △6,362,000 → △5,130,000(1,232,000) (100-401-02) 감리비 ◦ 감리비(부기삭제) △1,435,000 → △667,000(768,000) (100-401-03)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부기삭제)
(일반회계)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1,150,124,260) 1,386,464,757	(×1,150,124,260) 1,386,564,757	(×0) 100,000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126,938) 2,944,843	(×126,938) 3,044,843	(×0) 100,000	(100-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 엘리베이터 수리 등 0 → 100,000 (100,000)

□ 문화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문 화 본 부			(x91,561,377) 447,338,950	(x91,561,377) 447,938,950	(x0) 600,000	[+ 1건 600,000 △ 0건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x1,653,600) 110,690,638	(x1,653,600) 111,290,638	(x0) 600,000	
(일반회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x0) 5,806,900	(x0) 6,406,900	(x0) 600,000	
원통사 호우피해 긴급보수 지원			(x0) 0	(x0) 600,000	(x0) 6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원통사 보수지원 0 → 600,000 (600,000)

행정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행 정 국			(×1,807,855) 3,298,622,937	(×1,807,855) 3,298,672,937	(×0) 50,000	[+ 1건 50,000 △ 0건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1,807,855) 19,112,491	(×1,807,855) 19,162,491	(×0) 50,000	
(일반회계) 시민참여 강화			(×1,807,855) 19,112,491	(×1,807,855) 19,162,491	(×0) 50,000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0) 1,000,000	(×0) 1,050,000	(×0) 50,000	(100-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1,000,000→1,050,000(50,000)

푸른도시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푸 른 도 시 국			(×26,656,789) 445,351,634	(×26,656,789) 445,501,634	150,000	[+ 1건 150,000 △ 0건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9,813,133) 19,343,011	(×9,813,133) 19,493,011	150,000	
(일반회계) 산림재해방지			(×9,813,133) 19,248,333	(×9,813,133) 19,398,333	150,000	
사방시설 유지관리			748,500	898,500	150,000	(100-401-01) 시설비 ◦ 개화산 산림 내 사방시설 유지관리 0 → 150,000(150,000)

□ 물순환안전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물 순 환 안 전 국			(×44,074,870) 1,117,089,220	(×44,074,870) 1,117,189,220	(×0) 100,000	[+ 1건 100,000 △ 0건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 관리			(×5,702,000) 173,901,679	(×5,702,000) 174,001,679	(×0) 100,000	
(일반회계) 하천복원 및 정비			(×1,502,000) 61,541,875	(×1,502,000) 61,641,875	(×0) 100,000	
여의천변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개량			(×0) 0	(×0) 100,000	(×0) 100,000	(100-401-01) 시설비 ◦ 공사비 0→100,000(100,000)

□ 의회사무처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의 회 사 무 처			24,934,461	25,184,461	250,000	[+ 1건 250,000 △ 0건
(의정담당관)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8,343,029	8,593,029	250,000	
정보화 사업			2,516,510	2,766,510	250,000	
의정 정보화 지원			443,519	693,519	250,000	(100-207-02) 전산개발비 ◦ 시의회원스톱네트워크(개발비) 0→224,700(224,700) (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시의회원스톱네트워크(web/WAS) 0→25,300(25,300)